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5-18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12902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수원지방법원 2019. 9. 5. 선고 2019구합60449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3. 25.
판 결 선 고	2020. 4. 2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5-18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 당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'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광만

판사 도정원

판사 양성욱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5-18

목 록

1. 대상 토지

[redacted]시 C 답 2072㎡

F 답 801㎡

2. 거부처분

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2018. 1. 25.자 취득세 등 감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8. 2. 28.자 거부처분, 2018. 10. 31.자 취득세 등 감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8. 12. 21.자 거부처분. 끝.